

청원 제출 용지

수신 : 국회의장

제 목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1. 청원소개서 3부  
2. 청원서 3부. 끝.

청 원 자(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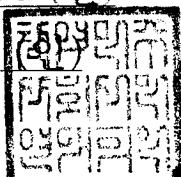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우:137-061) / (전화:521-5364)

성 명 :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재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인)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소개의원(대표) : 이성재 (인) 외 인



# 사회복지사업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제반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 행위 등 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 ② 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④ 이 법에서 “사회복지 단체”라 함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법률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규정한다.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신의에  
, 죽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  
여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  
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보건복지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  
다.

1.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

2.사회복지사업 상호 간의 조정

3.사회복지사업 예산편성

4.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및 법령 개폐

5.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회의 출석 요구권과 자료제출 및 답변 요구권을  
갖는다.

④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심의관으로 한다.

⑤중앙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분야 별로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1.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

4.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단체의 대표자

5.노인, 장애인, 여성을 대표하는 자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⑦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지방사회복지위원회는 중앙사회복지위원회의 규정에 준하여, 위원의 수는 20인 또는  
10인 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①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읍·면·동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복지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사회복지전문인력

**제7조(사회복지사의 지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전문인으로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상의 진단이나 사정(査定)에 대해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사회복지사의 권한)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를 대신하여 그 권익을 옹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는 노동관계법에 따르는 기본적인 권리を持つ다.

③ 사회복지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원조하는 대상자에 대한 행정 정보의 열람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복지사의 의무) ①사회복지사는 인간을 존중하고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업무상 알게 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허락없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단, 대상자가 미성년자 또는 의사표시능력이 없는 장애인, 노인 등의 경우는 그 친권자나 사실상의 보호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지도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시행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하거나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국가기관이나 국가가 지정하는 전문가

단체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의해 합격자에게 교부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하되, 2급 자격증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르는 업무와 대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상시 종사자의 5분의 2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회복지단체의 경우는 상시 종사자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한다.

**제1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되, 그 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그 관할 지역 안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여성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며, 관계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이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④ 전담공무원이 그 관할지역 안의 부랑인을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행할 경우에 해당 경찰관서와 사회복지시설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 전문가 등)** ①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거나 참여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적자격을 가진 전문가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며, 사회복지사와의 협력의 의무를 갖는다.

② 단순 종사자의 경우에도 제8조 제2항과 제9조를 준용한다.

### **제3장 사회복지법인**

**제15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시·도이 상에 걸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업
10.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제17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함께 한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임원은 시·도지사(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되, 이하 이 장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⑥ 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은

직원, 전문가,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자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기타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기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의 종료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임원의 보충)** ①이사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산 등)** ①법인은 사회복지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법인은 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매 회계연도의 예·결산 사항과 자산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서류의 비치)** 법인은 법인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정관

2.임원의 성명과 주소

### 3. 재산목록

### 4. 회의록

###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24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설립인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6. 공익을 해치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8. 정당한 이유없이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제17조 제3항을 위반할 때
  9.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는 상태를 지속할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이 지날 때까지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잔여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7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주무관청은 법인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익을 그가 행하는 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합병)**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29조(정관변경 등의 허가)**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거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해당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되,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및 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협회는 국가기관의 위임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 고시를 주관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원칙과 방법은 정관에 규정한다.

⑤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형태로 공동모금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한다.

#### **제4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나 사회복지단체도 개인 또는 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지역주민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종류별 설정과 그 설치기준 및 인·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시설의 규모가 상시 10인 이하만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35조(시설의 장)**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경력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운영위원회)**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이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7조(인가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법에 명시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때

5. 단체나 개인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

**제38조(정비의 권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시설이 그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른 유사한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장소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시설이 다른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부담금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또는 단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법인 등에 대해 사업의 내용과 종사자의 자격과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타 법인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부담금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부담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교부를 받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0조(비용의 징수)** ①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법인 또는 시설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법인 또는 시설 및 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징수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보착

**제41조(압류금지)** 이 법 및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회복지관련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4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4조·제27조·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3조(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4조(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인의 자산운용 및 법인 또는 시설 및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단체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지도훈련에 관한 사무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제39조에 의한 부담금 지급에 대한 평가는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가처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환수를 명할 수 있으며, 금전이 아닌 경우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금전을 환수한다.

제47조(권리구제)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법률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5조에 의한다.

**제48조(별칙)** ①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별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그 수의사업을 행하는 자
2.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제7조 제2항의 권리를 침해한 자,
4.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0조(별칙)** 제12조, 제35조 또는 제40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징역 1년 이하에 처한다.

**제51조(양별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협회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협의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과태료)** ①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자격증)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1급 자격증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기존의 3급 자격증은 2급으로 하며, 기존 2급에 대해서는 협회의 평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한다.

제4조(법인, 시설 및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보며, 단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성된 이사회는 1년 이내에 이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제7조(시설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에 미달하는 시설의 장은 개정된 규정에 맞도록 1년 이내에 조치한다.